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2020.8.18. 규정 제63호

개정 2022.1.17 규정 제108호

개정 2026.4.10 규정 제2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임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면책”이란 공단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호의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란 공단 감사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이나 제2호 “징계 또는 변상”, 제3호 “개선”, 제4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직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및 책무)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점검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기획혁신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책임관은 임직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 업무조정 및 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관련 업무를 해당부서로 이관하여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임직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및 면책대상자) 이 내규에 따른 지원 및 면책 등은 공단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직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제3장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7.>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규정 정비 등) ① 이사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규정을 제정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 및 규정

등을 해석할 때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 및 규정 등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① 이사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라 임직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시 요청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감사결과에 따른 피감사자의 적극행정 면책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2.1.17.]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지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7.>

② 외부위원은 적극행정 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이사장이 지명한다.

③ 내부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이상의 임직원으로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이 지명한 내부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나 이사장의 명령에 의하여 재임기간 중이라도 위촉의 해지·변경이 가능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제12조(지원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운

영에 따른 심의요청 및 감사결과에 따른 피감사자의 적극행정 면책신청 접수 시 임시회 방식으로 소집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요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회의소집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는 심의요청에 따라 기획혁신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2026. 4. 1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관련 임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지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이 임명한 내부위원이 적극행정 운영심의 및 면책심의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위원은 제척의 대상이 되며, 해당 심의에 관한 회의 및 표결 등에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의 기록관리 등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혁신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혁신부장은 제1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감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4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임직원은 업무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조례·내규 등의 규정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2026. 4. 10.>

제15조(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① 이사장은 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직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인사상 우대조치 등) 이사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직원의 희망요건,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선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17조(적극행정면책의 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

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6. 4. 10.>

1.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적극행정면책 제외사유)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의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4.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6.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을 한 경우
7. 채용비위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19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착수할 때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활동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안내문을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공단 감사규정 제3조에 의한 특별감사와 같이 사전 통보 없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0.>

제20조(지원위원회의 면책심의) ①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심의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 증진과 공단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여부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부 또는 여수시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해당 업무처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성·불가피성 여부

제21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대상자 또는 감사 대상부서의 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있기 이전에 하여야 하며,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면책심사 절차) 감사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사조서를 작성한 뒤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지원위원회는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제17조의 각 호에 명기된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8조의 면책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제23조(자료제출 요구 등)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인 및 면책심의대상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심의결과의 관리 등) ① 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 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의를 신청한 자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결과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8호, 2022.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호, 2026. 4. 10.>

이 규정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면책심사 신청 안내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요건

- 감사를 받은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의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을 한 경우
- 채용비위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제21조 관련)]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요지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4. 그 밖의 사항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		
감사대상 부서장 의견		
	감사대상 부서장 확인 (서명 또는 인)	

※ 필요 시 관련 증명서류 및 의견서 첨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적극행정 운영내규」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위(급)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제22조 관련)]

적극행정면책 심사조서

감사기관(부서)명		감사 연월일	
대상건명			
신청인			
심사 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 지적사항			
면책 신청사유 및 면책 요건별 검토의견			
면책 신청사유 (면책조건)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합 의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결과

대상건명						
심사 대상자	부서		직위(급)		성명	
심의 결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의견제시 요청서

신청인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제 목				
추진사업	1. 사업 개요 (관련 법령 기재) 2. 추진 경과(신청기관(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요청사유	1. 주요 문제점 2. 요청 사항 붙임 : 관련 증빙자료 등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